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10. 1 선고 2019가단54721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성

피 고 B

판결 선고 2019. 10. 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박하영

별지